

인천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6나6423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6나6423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가단1713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대우스틸

변론종결 2018. 5. 3.

판결 선고 2018. 5. 31.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가단1713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C 답 2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4. 9. 26. 접수 제2513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두산스틸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4. 10. 14. 접수 제26544호로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피고 앞으로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였는데, E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이 2014. 9. 25. 매매계약을 작성하는 것처럼 원고를 속여서 원고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4. 9. 25.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는 현장에 함께 있었고, 원고의 인감도장을 E에게 건네주어 위 서류들에 날인하도록 한 후 바로 이를 교부받았던바, 날인 전후로 위 서류들의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서인 줄 알고 받았을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후 E를 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취하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오히려 합의금 15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F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해주면 이를 담보로 원료를 공급받아 수일 내로 건설자재를 생산·납품하여 매매대금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원고를 속여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를 건네받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된 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1101호 사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조된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준민

판사진원두

판사이에림